

소하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(안 제4조제4항).
-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(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